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8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배 정 미

나. 제안이유

-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,
-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기능 신설,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667명 → 1,697명(+30명)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 : 일반직 1,629명 → 1,659명(+30명)
 - 4급 : 10명 → 11명(+1명)
 - 5급 : 82명 → 90명(+8명)
 - 6급 이하 : 1,527명 → 1,549명(+22명)
 - 전문경력관 : 9명 → 8명(△1명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,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구 춘 서

○ 본 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정원의 총수를 1,667명에서 30명이 늘어나는 1,69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기준인건비 의무인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